교무위원회규정

제 정 1995. 3. 개 정 1998. 9. 개 정 2007. 9. 개 정 2012. 11. 개 정 2013. 1. 2017. 2. 개 정 개 정 2018. 10. 개 정 2020. 11. 개 정 2021. 09. 2022. 10. 개 정 개 정 2024. 04.

- 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학 "본 대학"이라 한다) 학칙 제57조에 의한 교무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구성 및 임무) ①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, 산학협력부총장, 학사1부총장, 학사2부총장, 기획부총 장보, 각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2.11.16, 개정 2013.01.01, 개정 2017.02.28., 개정 2018.10.08., 개정 2020.11.11., 개정 2021.09.03., 개정 2022.10.13.)(개정 2024.04.01.)
 - ②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제3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교원은 보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한 위원은 위촉기간으로 한다.
- 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교무운영의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.
 - 2. 각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.
 - 3. 학칙 및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.
 - 4.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사항.
 - 5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.
- 제5조 (의안발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발의한다.
 - ②위원이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제안하여야 한다.
 - ③위원장은 제안된 의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.
- 제6조 (회의)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**제7조 (회의결과)** ①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즉시 내부결재로 기안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②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며, 총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 (기타)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초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ㅂ 치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보 친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03.29.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「교무위원회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"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, 산학협력부총장, 학사1부총장, 학사2부총장, 기획부총장보, 각처의 장 및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한다."로 한다.